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4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노종면・이정헌・황정아

정동영 · 조인철 · 박민규

이훈기 · 김우영 · 최민희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,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.

또한,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, 취재

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46조, 제 50조 및 제52조). 법률 제 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11人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理事는"을 "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 및 사회"로, "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15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(종전의 제7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. 이 때, 각 정당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순으로 배분하되,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.

각 정당별 = 국회의원이 소속된 ÷ 60 추천인 수 정당의 의석수 ÷ 60

- 2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
- 3.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 상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, 그 외 노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다.
- 4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5.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6.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제5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- 2.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동의가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한다.

제3조(이사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2 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 정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 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
제4조(집행기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	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	②
이사 <u>11人</u> 으로 구성한다.	<u>15명</u>
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	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지역 및 사회
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	<u>다음 각 호에 따</u>
	라 추천된 사람 15명을 방송통
	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
	통령이 임명한다.
<u><신 설></u>	1.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
	추천하는 5명. 이 때, 각 정당
	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
	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
	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
	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
	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
	배분하되, 소숫점 이하 수가
	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
	<u> 다.</u>
	구하이의하
	각 정당별 = 소속된 정당의 ÷ 60 추천인 수 의석수

2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 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

- 3.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 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, 그 외 노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다.
- 4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사람 1명
- 5.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사람 1명
- 6.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- ④ ~ ⑥ (생 략)
-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.< 단서</td>신설>

<u><신</u>설>

⑧ • ⑨ (생 략)

第50條(執行機關) ① ~ ⑥ (생략)

<신 설>

- 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- 8 -----
- -----. <u>다만, 제</u>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 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 다.
- <u>⑩</u>· <u>⑪</u> (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)
- 第50條(執行機關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 -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 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
 - 2.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지장을 초래한 경우

第52條(職員의 任免) (생략)

<신 설>

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경우

第52條(職員의 任免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동의가 필요 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「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 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 에 따른다.